

2026년 건축·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※ 적용시기 : 2026. 04. 13. 입찰공고분부터 (참고: 간접노무비율, 기타경비율, 일반관리비율, 이윤율,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)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[기타경비]		공사규모 (추정가액)	[일반관리비]		[이윤]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				
		(직노) x 율		(재+노) x 율			(재+노+경) x 율			(직접공사비) x 율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					
	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	건축, 산업설비 (건축)	전문- 전기·통신· 소방·기타		(노+경+일) x 율	종합건설업		전문건설업	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^{주2)}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^{주3)}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
1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7.5	17.5	5.0	5.0	5억 미만	8.0	8.0	15.0		구분	요율	구분	요율	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^{주1)}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				
	7~12개월 (365일)	17.9	17.9	5.2	5.2												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8.2	18.2	5.5	5.5						건축공사	0.07	비계·구조물해체공사	0.68	5억 미만	건축공사	3.11			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9.4	19.4	6.1	6.1											토목공사	3.15						
10억 - 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7.4	17.4	5.2	5.2	30억 미만	8.0	6.5	15.0		산업·설비공사	0.16	석공사, 철근콘크리트공사, 가스시설공사(1종)	0.32	5억 ~ 50억 미만	중건설공사	3.64						
	7~12개월 (365일)	17.8	17.8	5.4	5.4											특수건설공사	2.07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8.1	18.1	5.7	5.7									0.16		건축공사	2.28	4,325		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9.2	19.2	6.4	6.4											토목공사	2.53	3,300					
50억 - 3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7.5	17.5	5.9	5.9	50억 - 100억 미만	6.5	5.0	12.0														
	7~12개월 (365일)	17.9	17.9	6.0	6.0														특수건설공사	1.59	2,450		
	13~36개월 (1095일)	18.2	18.2	6.4	6.4						100억 - 300억 미만									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9.4	19.4	7.0	7.0																	건축공사	2.37
300억 - 10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7.5	17.5	6.1	6.1	300억 - 1000억 미만	5.0	4.5	10.0														
	7~12개월 (365일)	17.9	17.9	6.3	6.3														토목공사	2.60			
	13~36개월 (1095일)	18.2	18.2	6.6	6.6														중건설공사	3.11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9.4	19.4	7.2	7.2														특수건설공사	1.64			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7.4	17.4	6.4	6.4	1000억 이상	4.5		9.0														
	7~12개월 (365일)	17.8	17.8	6.5	6.5														건축공사	2.64			
	13~36개월 (1095일)	18.1	18.1	6.9	6.9														토목공사	2.73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9.3	19.3	7.5	7.5														중건설공사	3.39			
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세금과공과금, 도서인쇄비 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 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		[건강보험료]		[노인장기요양보험료]		[연금보험료]		[산재보험료]				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설치 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											
		(직노) x 3.595		(건강보험료) x 13.14		(직노) x 4.75		(노) x 3.56															
		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(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)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* 모든 건설공사 적용. 노동부 고시 제2024-77호(2024. 12. 30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		주1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- 재료비+직접노무비+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주2) 대상액이 재료비, 직접노무비,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주3) 대상액이 재료비,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*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- [건축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나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- [토목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- [중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해당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· 고재방·담 공사 등 · 담 신설공사, 재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재방신설공사 ·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·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한 신설공사 및 재방신설공사 · 터널신설공사 등 · 도로, 철도,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, 교량,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- [특수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1) 제1호 '마'목로서 시행규칙(별표3)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/야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·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, 「소방공사업법」, 「문화재수리공사업법」에 의한 공사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,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2 건축공사,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11호, 2025.2.12.)											
		[고용보험료]		[환경보전비]	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																	
		(노) x 율		(직접공사비) x 율		(직접공사비) x 율				공사규모(추정가액)													
		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		요율		구분		요율		50억 미만				0.081									
		[1등급] 1200억 이상		1.57		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		0.9		50억 이상 - 100억 미만				0.080									
		[2등급] 800억 ~ 1200억 미만		1.30		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		0.4	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				0.075									
		[3등급] 520억 ~ 800억 미만		1.13		지하철		0.5	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				0.071									
		[4등급] 340억 ~ 520억 미만		1.06		철도		1.5	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건축)				0.068									
		[5등급] 210억 ~ 340억 미만		1.03		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		0.5		터전·대안공사				0.084									
		[6등급] 130억 ~ 210억 미만		1.02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		1.8															
		[7등급] 고시금액 ~ 130억 미만		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		0.8															
		7등급 미만		1.01		담		1.1															
		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 시행령 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사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23-235호, 2023.7.6.)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택지개발		0.6		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국가유산수리공사 ※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													
						기타 토목(하천 등)		0.8															
						주택(개개발, 재건축)		0.7															
						주택(신축)		0.3															
						주택 외 건축		0.5															
						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		0.3															
						*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				[석면부담금]				[임금채권부담금]									
						※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국가유산 수리공사				(노) x 0.006				(노) x 0.09									
										* 모든 건설공사 적용. 환경부 고시 제2025-25호(2025. 12. 22),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노동부 고시 제2025-100호(2025.12.31),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용 고시													
						[퇴직금제부담금]																	
						(직노) x 2.3																	
						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				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,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													